

# 주식회사 한우리열린교육

##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 17 조에 의하여 2020년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0년 12월 22일 (화) 오후 2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6(당산동 3가), 한우리빌딩 대강당(지하 1층)

3. 회의목적사항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주식회사 디지털대성과의 합병 및 회사 해산에 관한 건

※ 합병계약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별첨 1]과 (주)디지털대성이 공시한 '투자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4.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인감증명서(법인)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위임인 인감날인必), 인감증명서(법인 및 개인), 대리인 신분증

※ 주주 본인명의로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필수

5. 기타사항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주주분께서는 합병 종료 후 전자등록으로 발행되는 (주)디지털대성의 합병신주를 배정받기 위한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 상기 주주분께서는 합병기일 전영업일(2021년 1월 29일)까지 주주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명증표 사본과 합병신주를 배정받을 증권계좌카드 사본을 당사 재무팀 앞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명증표 : 개인은 신분증 사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께서는 구주권 제출 기간(2020년 12월 23일 ~ 2021년 1월 29일)동안 해당 구주권을 당사 재무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07일  
주식회사 한우리열린교육  
대표이사 김희선 (직인생략)

# [별첨 1]

## ■ 제 1 호 의안 : 주식회사 디지털대성과의 합병 및 회사 해산에 관한 건

### 1. 합병의 목적 및 방법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1) 합병의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상호	주식회사 디지털대성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52-22 단우빌딩 6 층,7 층,8 층	
	대표이사	김 희 선	
	법인구분	코스닥시장	

합병 후 소멸회사	상호	주식회사 한우리열린교육	주식회사 강남대성기숙학원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7 길 16 (당산동 3 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527-5
	대표이사	김 희 선	김 형 석
	법인구분	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인

##### (2) 합병 배경

당사는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는 교육 서비스 시장에서 고객의 니즈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부분의 결합을 통해 상호 보완 및 시너지 창출 등으로 사업 경쟁력 강화
- ② 중복되는 사업의 통합과 규모의 경제 달성, 빠른 의사결정 구조 확립과 비용 효율화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 제고
- ③ 동종업을 영위하는 우량 계열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상장 존속법인의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 향상
- ④ 합병법인의 대형화를 통해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충성 고객 증가와 브랜드 경쟁력 향상
- ⑤ 기업가치 향상과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

#### 나. 합병 방법

(주)디지털대성이 (주)한우리열린교육 및 (주)강남대성기숙학원을 흡수합병하여, 합병회사인 (주)디지털대성은 존속하고 피합병회사인 (주)한우리열린교육 및 (주)강남대성기숙학원은 소멸합니다. (주)디지털대성은 본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합병기일 현재 (주)한우리열린교육 및 (주)강남대성기숙학원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합니다.

## 2. 합병의 요령

### 가. 합병 후 변경될 사항

(단위 : 주, 원)

구 분	합병 전			합병 후
	(주)디지털대성	(주)한우리열린교육	(주)강남대성기숙학원	(주)디지털대성
수권주식수	80,000,000	10,000,000	800,000	80,000,000
발행주식의 총수	22,713,473	2,523,179	200,000	29,656,989
자본금	11,356,736,500	1,261,589,500	1,000,000,000	14,828,494,500

주 1) 발행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합병당사회사인 (주)디지털대성과 (주)한우리열린교육 및 (주)강남대성기숙학원의 주식수 증감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2) 합병 전 자본현황은 (주)디지털대성은 2020년 3분기말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주)한우리열린교육 및 (주)강남대성기숙학원은 2020년 3분기말 현재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나. 신주배정 내용

합병회사인 (주)디지털대성은 1주당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6,943,516주를 발행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 (주)한우리열린교육 주주 :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피합병회사인 (주)한우리열린교육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보통주주에 대하여 (주)한우리열린교육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주당 (주)디지털대성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2.1676483주를 배정합니다.

- 배정기준일 : 2021년 02월 01일 (합병기일)
- 유통개시예정일 : 2021년 02월 19일 (상장예정일)
-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상기 일정은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본건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합병 선행조건의 충족 여부,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해당 단주는 「상법」 제 341조의2 제 3호에 따라 (주)디지털대성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합니다.

### 라.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주)디지털대성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본건 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신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합병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1년 02월 19일이며,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 교부금 등 지급

(주)디지털대성이 (주)한우리열린교육 및 (주)강남대성기숙학원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주)한우리열린교육 및 (주)강남대성기숙학원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주식의 교부와 단주 매각 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 3. 진행경과 및 일정

#### 가. 진행경과

구 분	내 용
2020년 11월 04일	합병 이사회 결의
2020년 11월 04일	합병계약 체결
2020년 11월 04일	합병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020년 11월 04일	증권신고서(합병) 제출
2020년 11월 25일	주주확정기준일
2020년 12월 07일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

#### 나. 주요일정

구 분		(주)디지털대성 (합병회사)	(주)한우리열린교육 (피합병회사)	(주)강남대성기숙학원 (피합병회사)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0년 12월 07일	2020년 12월 07일	2020년 12월 07일
	종료일	2020년 12월 21일	2020년 12월 21일	2020년 12월 21일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0년 12월 22일	2020년 12월 22일	2020년 12월 22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0년 12월 22일	2020년 12월 22일	2020년 12월 22일
	종료일	2021년 01월 11일	2021년 01월 11일	2021년 01월 11일
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자		2021년 02월 10일	2021년 01월 28일	2021년 01월 28일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2020년 12월 23일	2020년 12월 23일
	종료일	-	2021년 01월 29일	2021년 01월 29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0년 12월 23일	2020년 12월 23일	2020년 12월 23일
	종료일	2021년 01월 29일	2021년 01월 29일	2021년 01월 29일
합병기일		2021년 02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1년 02월 02일		
합병등기 예정일자		2021년 02월 02일		
신주 유통개시 예정일		2021년 02월 19일		
신주상장 예정일		2021년 02월 19일		

- 주 1) 합병종료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합니다.
- 주 2)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 3)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 4) 상기 합병일정은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본건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합병 선행조건의 충족 여부,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 5)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구주권제출 기간이 소멸되었으나 (주)한우리열린교육의 주권은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실물주권임에 따라 구주권제출 기간동안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께서는 해당 구주권을 (주)한우리열린교육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합병의 합병가액·비율**

**가. 보통주 기준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과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주)디지털대성 (합병법인)	(주)한우리열린교육 (피합병법인)	(주)강남대성기숙학원 (피합병법인)
가. 기준시가	6,961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나. 본질가치(주 1)	해당사항 없음	15,089	182,948
A. 자산가치	3,182	7,282	123,855
B. 수익가치	해당사항 없음	20,294	222,343
다. 상대가치(주 2)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합병가액(주 1)	6,961	15,089	182,948
마. 합병비율	1	2.1676483	26.2818561

주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 조의 5 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당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습니다.

주 2)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없으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산출근거**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법인의 기준시가와 자산가치 및 합병당사회사의 합병가액 결정방법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금액
기준시가	6,961
자산가치	3,182
합병가액	6,961

**(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 조의 5 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 과 1.5 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 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주)한우리열린교육	(주)강남대성기숙학원
가. 본질가치 $[(Ax1+Bx1.5)÷2.5]$	15,089	182,948
A. 자산가치	7,282	123,855
B. 수익가치	20,294	222,343
나. 상대가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가액	15,089	182,948

## 5.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 522 조의 3 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20년 11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접수기간 : 2020년 12월 07일 ~ 2020년 12월 21일)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본건 합병 당사회사 중 (주)디지털대성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게 되며, 비상장 2개사((주)한우리열린교육, (주)강남대성기숙학원)는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 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 제 3 항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 조의 7 제 3 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 조의 7 제 3 항에 따라 산정된 본건 합병 당사회사 주식 매수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합병 당사회사인 (주)디지털대성, (주)한우리열린교육 및 (주)강남대성기숙학원은 동 매수가격을 해당 주주에게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분	(주)디지털대성	(주)한우리열린교육	(주)강남대성기숙학원
주식의 매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6,789 원	15,089 원	182,948 원

### 다.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 (1) 행사절차

##### 가) 반대의사의 통지

「상법」 제 522 조의 3 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20년 11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접수기간 : 2020년 12월 07일~2020년 12월 21일)하여야 합니다.

##### 나)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 522 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 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합병 당사회사 각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접수장소**

회사명	장소
(주)디지털대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52-22 단우빌딩 6층,7층,8층
(주)한우리열린교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6(당산동 3가), 한우리빌딩 6층 (재무팀)
(주)강남대성기숙학원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527-5

**(3) 청구기간**

구분		(주)디지털대성 (합병회사)	(주)한우리열린교육 (피합병회사)	(주)강남대성기숙학원 (피합병회사)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0년 12월 07일	2020년 12월 07일	2020년 12월 07일
	종료일	2020년 12월 21일	2020년 12월 21일	2020년 12월 21일
주주총회 예정일자		2020년 12월 22일	2020년 12월 22일	2020년 12월 22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0년 12월 22일	2020년 12월 22일	2020년 12월 22일
	종료일	2021년 01월 11일	2021년 01월 11일	2021년 01월 11일

**라.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의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

각 당사자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한 이후 각 당사자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각 당사자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에 대하여 반대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사백억(40,000,000,000)원 이상인 경우 각 당사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결의할 수 있고, 어느 당사자가 이러한 중지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 전원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1)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주)디지털대성, (주)한우리열린교육 및 (주)강남대성기숙학원의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문 발송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디지털대성 : 2021년 02월 10일
- (주)한우리열린교육 : 2021년 01월 28일
- (주)강남대성기숙학원 : 2021년 01월 28일

**(3)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주주가 신고한 계좌로 이체(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

**(4)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 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주)디지털대성이 금번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5 제 4항과 동법 시행령 제 176조의 7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본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문 발송일 현재,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할 자기주식 처분방법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

또한, 합병회사인 (주)디지털대성은 피합병회사인 (주)한우리열린교육 및 (주)강남대성기숙학원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 합병신주를 교부하고, 이를 합병 후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주)한우리열린교육 및 (주)강남대성기숙학원의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 제 4 항과 동법 시행령 제 176 조의 7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주식 처분으로 인해 (주)디지털대성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주들의 지분가치를 희석할 수 있습니다.

#### **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

「상법」 제 522 조의 3 에 따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디지털대성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 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소비자대차계약 해지 등 주식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사. 기타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 (1)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2)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주)디지털대성, (주)한우리열린교육 및 (주)강남대성기숙학원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